

제6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5. 11. 20.(금) 09:4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김재홍 부위원장
허원제 상임위원
이기주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○ 제5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

○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⑥ 의결사항

가. (주)뽀뿌커뮤니케이션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(2015-61-263)

-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인 (주)뽀뿌커뮤니케이션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시정조치(안)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심의한 결과,
 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(개인정보의보호조치)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(주)뽀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제64조(자료제출 등) 제4항에 따라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을 명하고,
 -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64조의3(과징금의 부과등)제1항에 따라 과징금 1억2백만원을 부과하고,
 - 접근 통제장치 미설치·운영, 접속기록 미보관, 암호화 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76조(과태료)에 따라 과태료 1,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알뜰폰·스마트폰앱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
관한 건(2015-61-264~271)

- 국민 생활의 밀접분야인 알뜰폰 및 스마트폰앱 서비스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에 대하여 방통위·행자부(PERT)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(안)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심의한 결과,
 - 같은 법 제28조(개인정보의보호조치)제1항을 위반한 SK텔링크(주), (주)유니컴즈, (주)에넥스텔레콤, (주)이지모바일, (주)인스코비, (주)해리슨앤컴퍼니, (주)프리온, (주)투게더스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제64조(자료제출 등)제4항에 따라 위반행위 관련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을 명하고,
 -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SK텔링크(주), (주)에넥스텔레콤에 대해서는 제76조(과태료)의 규정에 따라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
 -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(주)유니컴즈에 대해 제76조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, (주)이지모바일에 대해 3,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
 -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(주)프리온, (주)투게더스에 대해서는 제76조에 따라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

-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·제3호를 위반한 (주)인스코비에 대해 제76조에 따라 1,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
-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·제4호를 위반한 (주)해리슨앤컴퍼니에 대해 제76조에 따라 1,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7] 보고사항

가. 「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」 제정안에 관한 사항

- o 판매점 사전승낙,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, 수수료 과다 지급 제한, 서비스 이용 제한 금지, 허위·과장광고 금지, 개인정보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『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』 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- 사업자 설명 및 실태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21)